의안번호	2220648
의 뢰 인	이상휘 의원
회 답 일	2026.09.23.
추계번호	26E39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면세 적용기한 삭제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삭제할 경우 부가가치세수는 2027년 1조 1,713억원 등 2027~2031년 5년간 총 6조 2,285억원(연평균 1조 2,45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감면 적용기한 삭제 시 부가가치세수는 5년간 총 5조 9,557억원(연평균 1조 1,911억원) 감소

○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감면 삭제 시 부가가치세수는 5년간 총 2,728억원(연평균 546억원) 감소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자동차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합계	−11,713	−13,083	−12,780	−12,491	−12,219	−62,285	−12,457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감면 적용기한 삭제(안 제106조의2 제1항)	−11,218	−12,521	−12,220	−11,934	−11,664	−59,557	−11,911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감면 적용기한 삭제(안 제106조의2제2항)	−495	−562	−559	−557	−555	−2,728	−546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6조의2(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제1항제1호 및 2호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의 적용기한 삭제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삭제 ○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의 적용기한 삭제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삭제	–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106조의2(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제1항제1호 및 2호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가.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감면 적용기한 삭제(안 제106조의2제1항제1호)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는 감면대상 석유류 공급량 추정치에 감면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추계

○ 최근 휘발유·경유 등에 대해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었던 점을 반영하여[1], 추계에는 조세지출 실적 대신 면세유 공급량의 증감률 추세를 활용

[표 4]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실적: 2019~2025년

(단위: 억원)

세목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교통·에너지·환경세	7,547	7,997	7,421	5,019	4,692	4,973	5,993
개별소비세	289	289	376	276	239	232	253
교육세	1,175	1,243	1,169	794	739	780	937
부가가치세	2,892	2,565	2,893	3,654	3,132	2,969	3,076
전체	11,903	12,094	11,859	9,743	8,802	8,954	10,259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추계 자료가 발생 기준임을 감안해, 징수 기준으로 면제액을 조정

○ 매년 징수 기간(부가가치세: 분기, 그 외 세목: 월)별로 면제액이 동일한 것으로 전제

1) 최근 유류세 인하: ('18.11.6.~'19.5.6.) 15% 인하 → ('19.5.7.~8.31.) 7% 인하 → ('21.11.12.~'22.4.30.) 20% 인하 → ('22.5.1.~6.30.) 30% 인하 → ('22.7.1.~12.31.) 37% 인하 → ('23.1.1.~'24.6.30.) 경유 37%, 휘발유 25% 인하 → ('24.7.1.~10.31.) 경유 30%, 휘발유 20% 인하 → ('24.11.1.~'25.4.30.) 경유 23%, 휘발유 15% 인하 → ('25.5.1.~10.31.) 경유 15%, 휘발유 10% 인하 → ('25.11.1.~'26.3.26.) 경유 10%, 휘발유 7% 인하 → ('26.3.27.~11.30.) 경유 25%, 휘발유 15% 인하 등

나.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감면 적용기한 삭제(안 제106조의2제1항제2호)

❑ 세수효과는 감면대상 석유류 공급량 추정치에 감면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추계

○ 최근 휘발유·경유 등에 대해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었던 점을 반영하여, 추계에는 조세지출 실적 대신 면세유 공급량의 증감률 추세를 활용

❑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추계

3. 재정수반 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감면 적용기한 삭제

(1) 추계방법

❑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량은 유종별로 2020~2025년 실적에 대한 연평균 증감률을 반영하여 추정

[표 5]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량 실적: 2020~2025년

(단위: 천kl, 천ton, %)

유종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감률
휘발유	202	201	194	189	191	190	−1.2
경유	1,855	1,767	1,667	1,663	1,626	1,621	−2.7
중유	43	38	34	21	21	23	−11.7
윤활유	8	8	7	7	7	7	−3.4
LPG부탄	0.4	1	1	1	1	2	43.6
LPG프로판	14	16	17	16	17	19	6.1
등유	443	440	423	350	341	365	−3.8

주: 중유 공급량은 부생유 2호(개별소비세율 동일)를 포함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제공 자료(2026년 6월)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간접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자동차세(주행분),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추계하고 합산

○ 추계기간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에 대한 유류세 감면은 없는 것으로 전제

[표 6] 현행 유종별 세율

유종	교통·에너지·환경세 (A)	개별소비세 (B)	교육세 (C)	자동차세(주행분) (D)	부가가치세 (E)
휘발유	529원/L[1]	–	A×15%	A×26%	(세전가격 +제세부담금 +품질검사수수료 등[3])×10%
경유	375원/L[1]	–			
등유	–	63원/L[1]	B×15%	–	
중유	–	17원/L		–	
윤활유	–	–[2]	–	–	
LPG부탄	–	275원/kg[1]	B×15%	–	
LPG프로판	–	14원/kg[1]	–	–	

주: 1) 현행 제도에 따라 추계기간 적용될 예정인 세율(탄력세율)을 반영
2) 윤활유의 경우 별도의 개별소비세는 없으며 부가가치세만 해당
3) 휘발유·경유·등유·중유의 경우 품질검사수수료 0.469원/L, 부탄(일반용)은 품질검사수수료 0.027원/kg 및 안전관리부담금 4.5원/kg, 판매부과금 62.28원/kg, 프로판(일반용)은 품질검사수수료 0.027원/kg 및 안전관리부담금 4.5원/kg(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조세」)을 반영

❑ 부가가치세 추계 시, 농·임·어업용 석유류의 세전가격은 최근 평균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반영

○ 석유류의 유종별 세전가격은 등락을 반복함에 따라 일정한 추세를 예측하기 어려워[2] 최근 실적인 2020~2025년 연평균 금액을 적용

[표 7] 유종별 세전가격 현황: 2020~2025년

(단위: 원/L, 원/kg)

유종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휘발유	397	638	980	837	816	763	739
경유	432	655	1,186	951	900	866	832
중유	451	606	895	786	816	772	721
LPG부탄	614	836	1,161	953	1,010	1,029	934
LPG프로판	588	803	1,119	947	971	990	903
등유	411	599	1,022	917	870	841	777

주: 유종은 보통 휘발유, 자동차용 경유, 일반용 부탄 및 일반용 프로판를 기준으로 집계함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www.petronet.co.kr)

(2) 추계결과

(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 농·임·어업용 석유류의 공급량은 2025년 유종별 실적에 최근 연평균 증감률(2020~2025년, 비용추계 전제 참고)을 반영하여 추정

2) 두바이유 가격(달러/배럴): ('18년) 69.66 ('19년) 63.53 ('20년) 42.29 ('21년) 69.41 ('22년) 96.41 ('23년) 82.10 ('24년) 79.58 ('25년) 69.36 ('26년 9월) 115.23

[표 8] 농·임·어업용 석유류의 유종별 공급량 추정: 2026~2031년

(단위: 천kl, 천ton)

유종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휘발유	188	185	183	181	179	176
경유	1,578	1,536	1,495	1,455	1,416	1,379
중유	21	18	16	14	13	11
윤활유	7	7	6	6	6	6
LPG부탄	3	5	7	10	14	20
LPG프로판	20	21	23	24	26	27
등유	352	338	326	313	301	290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는 유종별 공급량 추정치에 각각의 세율 적용하여 추계

○ 교통·에너지·환경세액 = 휘발유 및 경유 공급량 추정치 × 세율(휘발유 529원/L, 경유 375원/L) × 조정계수*

○ 개별소비세액 = 등유, 중유, LPG부탄 및 프로판 사용량 추계 × 세율(등유 63원/L, 중유 17원/L, 부탄 275원/kg, 프로판 14원/kg) × 조정계수*

* 면세유 공급 시점과 감면액 발생 시점 간 차이 등을 보정하기 위해,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조정계수를 산출해 반영(2020년 기준, 교통·에너지·환경세 0.996, 개별소비세 0.999)

[표 9] 농·임·어업용 석유류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감면액 추계(귀속):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교통·에너지·환경세	6,715	6,550	6,390	6,233	6,081
개별소비세	232	229	230	234	243

(나) 교육세 및 자동차세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교육세와 자동차세(주행분)은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의 부가세(Surtax)이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추계액에 세율을 곱하여 추계

○ 교육세액 = (교통·에너지·환경세 추계액 + 개별소비세 추계액[3]) × 15%

3) 프로판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포함하지 않음

○ 자동차세액(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 추계액 × 26%

[표 10] 농·임·어업용 석유류 교육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감면액 추계(귀속):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교육세	1,042	1,016	992	969	948
자동차세(주행분)	1,746	1,703	1,661	1,621	1,581

(다) 부가가치세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추계

○ 부가가치세액 = 유종별 공급가액 추정액[4] × 10% × 조정계수*

- 휘발유, 경유 공급가액 = (세전가격+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자동차세 주행분+품질검사수수료)×유종별 사용량 추계
- 등유, 중유, LPG부탄 공급가액 = (세전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품질검사수수료 등)×유종별 사용량 추계
- LPG프로판 공급가액 = (세전가격+개별소비세+품질검사수수료 등)×사용량 추계

* 실제 부가가치세 감면액과 추계액 간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조정계수(2020년 기준, 1.14) 적용

[표 11] 농·임·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감면액 추계(귀속):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부가가치세	3,060	2,983	2,910	2,842	2,778

(라) 추계 결과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삭제할 경우, 세수효과는 2027년 1조 1,218억원 등 2027~2031년 5년간 총 5조 9,557억원(연평균 1조 1,911억원) 감소 예상

○ 추계에 활용한 석유류 공급량이 간접세 신고 기준 자료임을 감안해 징수

4) 윤활유의 세전가격은 별도 집계되고 있지 않아, 과거 부가가치세 감면액 실적치와 추계치 간 비율(조정계수)을 활용해 해당 금액을 추계액에 반영

기준으로 추계액을 조정

-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는 매월 공급량에 대한 석유 판매업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달 공제 및 환급되므로 당해연도 11/12, 차년도에 1/12 공제 및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
-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의 신고 및 납부가 분기별로 이루어지므로 당해연도 3/4, 차년도에 1/4 공제 및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

[표 12]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적용기한 삭제 시 세수효과(징수):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 교통·에너지·환경세		-6,155	-6,564	-6,403	-6,246	-6,093	-31,462	-6,292
- 개별소비세		-213	-230	-230	-233	-243	-1,148	-230
- 교육세		-955	-1,019	-994	-971	-950	-4,889	-978
- 자동차세(지방세)		-1,600	-1,707	-1,665	-1,624	-1,584	-8,180	-1,636
- 부가가치세	국세(74.7%)	-1,714	-2,243	-2,188	-2,136	-2,087	-10,368	-2,074
	지방소비세(25.3%)	-581	-760	-741	-723	-707	-3,511	-702
전체		-11,218	-12,521	-12,220	-11,934	-11,664	-59,557	-11,911

나.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감면 적용기한 삭제

(가) 추계방법

❑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공급량은 유종별 2020~2025년 실적의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추정

[표 13]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공급량 실적: 2020~2025년

(단위: 천kl, %)

유종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가율
경유	76	81	86	81	82	75	-0.2
중유	50	55	55	54	46	43	-3.0

자료: 해양수산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간접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자동차세(주행분), 부

가가치세로 구분하여 추계

○ 추계기간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에 대한 유류세 감면은 없는 것으로 전제

○ 윤활유의 세전가격은 별도 집계되고 있지 않아, 과거 부가가치세 감면액 실적치와 추계치 간 비율(조정계수)을 활용해 해당 금액을 추계액에 반영

[표 14] 현행 유종별 세율

유종	교통·에너지·환경세 (A)	개별소비세 (B)	교육세 (C)	자동차세(주행분) (D)	부가가치세 (E)
경유	375원/L[1]	–	A×15%	A×26%	(세전가격 +제세부담금 +품질검사수수료[3]) ×10%
중유	–	17원/L	B×15%	–	
윤활유[2]	–	–	–	–	

주: 1) 2026년 이후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은 탄력세율인 375원/L를 반영
2) 윤활유의 경우 별도의 개별소비세는 없으며 부가가치세만 해당
3) 품질검사수수료는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명시되어 있으며 석유제품은 0.469원/L

❑ 부가가치세 추계 시,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의 세전가격은 최근 평균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반영

○ 석유류의 유종별 세전가격은 등락을 반복함에 따라 일정한 추세를 예측하기 어려워 최근 실적인 2020~2025년 연평균 금액을 적용

[표 15] 유종별 세전가격 현황: 2020~2025년

(단위: 원/L)

유종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경유(선박용)	416	581	1,090	914	857	813	779
중유	451	606	895	786	816	772	721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www.petronet.co.kr)

(2) 추계결과

(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 추계기간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의 공급량은 2025년 유종별 실적에 최근 연평균 증가율(2020~2025년)을 반영하여 추정

[표 16]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의 유종별 공급량 추정: 2026~2031년

(단위: 천kl)

유종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경유	75	75	75	75	74	74
중유	42	40	39	38	37	36

❑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는 유종별 공급량 추정치에 각각의 세율 적용하여 추계

○ 교통·에너지·환경세액 = 경유 공급량 추정치 × 세율(375원/L) × 조정계수*

○ 개별소비세액 = 중유 공급량 추정치 × 세율(17원/L) × 조정계수*

* 면세유 공급 시점과 감면액 발생 시점 간 차이 등을 보정하기 위해,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조정계수를 산출해 반영(2020년 기준, 교통·에너지·환경세 1.083, 개별소비세 0.822)

[표 17]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감면액 추계(귀속):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교통·에너지·환경세	304	303	303	302	301
개별소비세	6	5	5	5	5

(나) 교육세 및 자동차세

❑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교육세와 자동차세(주행분)은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의 부가세(surtax)이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추계액에 세율을 곱하여 추계

○ 교육세액 = (교통·에너지·환경세 추계액 + 개별소비세 추계액) × 15%

○ 자동차세액(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 추계액 × 26%

[표 18]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교육세와 자동차세 감면액 추계(귀속):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교육세	46	46	46	46	46
자동차세(주행분)	79	79	79	79	78

(다) 부가가치세

❑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추계

○ 부가가치세액 = 유종별 공급가액 추정액[5] × 10% × 조정계수*

- 경유 공급가액 = (세전가격+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자동차세+품질검사수수료)× 경유 공급량 추계
- 중유 공급가액 = (세전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품질검사수수료)× 중유 공급량 추계

* 실제 부가가치세 감면액과 추계액 간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조정계수(2020년 기준, 1.028) 적용

[표 19]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감면액 추계(귀속):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부가가치세	128	127	126	125	124

(라) 추계 결과

❑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삭제할 경우, 세수효과는 2027년 495억원 등 2027~2031년 5년간 총 2,728억원(연평균 546억원) 감소 예상

○ 추계에 활용한 석유류 공급량이 간접세 신고 기준 자료임을 감안해 징수 기준으로 추계액을 조정

-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는 매월 공급량에 대한 석유 판매업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달 공제 및 환급되므로 당해연도 11/12, 차년도에 1/12 공제 및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
-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의 신고 및 납부가 분기별로 이루어지므로 당해연도 3/4, 차년도에 1/4 공제 및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

5) 윤활유의 세전가격은 별도 집계되고 있지 않아, 과거 부가가치세 감면액 실적치와 추계치 간 비율(조정계수)을 활용해 해당 금액을 추계액에 반영

[표 20]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적용기한 삭제 시 세수효과(징수):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 교통·에너지·환경세		-279	-304	-303	-302	-302	-1,489	-298
- 개별소비세		-5	-5	-5	-5	-5	-26	-5
- 교육세		-43	-46	-46	-46	-46	-227	-45
- 자동차세(지방세)		-72	-79	-79	-79	-78	-387	-77
- 부가 가치세	국세(74.7%)	-72	-95	-94	-93	-93	-447	-89
	지방소비세 (25.3%)	-24	-32	-32	-32	-31	-151	-30
전체		-495	-562	-559	-557	-555	-2,728	-546

Ⅳ. 부대의견

❑ 없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김효경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경	02-6788-4647	hkkim@assembly.go.kr